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보수교육 실시 알림

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신청 시 등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대행업무 및 대행기관 전용 창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
※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및 시행규칙 제68조의2, 법무부고시 2021-447호

1. 보수교육 신청 대상

-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출입증을 발급받은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과 소속직원으로서 권한(전자민원 및 전용창구 이용)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
 - * 보수교육일 기준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야 교육 신청 가능
- ** 합동사무소나 법인 등의 경우 구성원과 소속직원을 포함하여 출입증 발급받은 모든 인원이 유효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권한(전용창구 및 전자민원 이용) 유지 가능

2. 보수교육 이수 기한

- 기존에 등록한 대행기관은 등록교육 이수 시부터 2년의 유효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- 교육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폐업·퇴사·등록취소 등으로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출입증은 유효하므로 보수교육 이수 대상이며 이수 즉시 권한 갱신
-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,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대행업무 및 대행기관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일반창구 이용(방문예약 필요)만 가능

3. 보수교육 관할 권역

- 교육은 <u>대행기관의 주소지에 따라</u> 해당 권역의 교육 관할 출입국· 외국인청(사무소)에서 이수하여야 하며,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할 경우 교육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O 권역별 해당 지역 및 개최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. 단, 서울남부 권역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해당 지역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합니다.

【보수교육 권역별 해당 지역 및 개최 주기】

권역	출입국·외국인관서	개최 주기
서울남부	서울청, 인천청, 수원청, 제주청, 남부소, 안산소, 양주소, 춘천소, 세종로출, 평택출, 고양출, 동해출, 속초출	월 2회 이상
대전	대전소, 청주소, 당진출, 서산출, 천안출	
부산	부산청, 울산소, 대구소, 창원소, 김해출, 구미출, 포항출, 사천출, 통영출, 거제출	격월 1회
광주	광주소, 전주소, 여수소, 광양출, 목포출, 군산출	

- ※ 예시) A행정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·외국인관서가 <u>대전외국인사무소</u>인 경우에는 대전권역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보수교육이 실시됨에 따라, <u>'22년 9월부터 등록교육은 권역에</u> 관계없이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에서만 진행됩니다.

4. 보수교육 참여 인원

○ 1회당 교육 참여인원은 집합교육의 경우 <u>20명</u>, 화상교육의 경우 <u>40명 이하</u>로 제한되며, 신청인의 수가 이를 초과할 경우 **선착순으로** 마감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.

5. 보수교육 운영 방식

○ 교육은 <u>집합교육이 원칙</u>이나, 서울남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전국에서 참여가 가능하므로 **실시간 화상교육이 병행**될 예정입니다. ○ 월별 교육 일정 공지 시 교육 운영방식(집합 또는 화상)을 함께 공지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.

6. 보수교육 참가 비용

O '24년도 대행기관 보수교육 참가비용은 무료입니다. (추후 변동 가능)

7. 비대면(화상교육) 참여자 주의사항

- O 비대면 교육은 온라인 실시간 화상강의 형태로 진행되며, 교육 참여자는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인터넷 환경 등을 사전에 준비 하여야 합니다.
- 첨부된 '<u>대행기관 화상교육 참여자 사전안내문</u>'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
월별 구체적인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, 접수처는 매월 게시되는 하이코리아 별도 공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